

(앞 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주된영업소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kl)			
	수송장비(kl)		자본금(억원)		
	기타				
⑦취급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1부 ※ 석유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1호 내지 제4호에 같음하여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